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박 중 화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박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직접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0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을 ‘0시~6시’로 명확히하고, 도로법상 필요한 규제와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폭력행위 등을 동반한 불법·과격 집회시위는 줄어들어 非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집회 시 도심권 무단 1박2일 집단 노숙 및 양방향 전차로 점거 등 불법집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집회시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합법적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로 인한 국민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현행 법령을 악용·회피하는 과도한 집회 소음 규제와 함께 심야시간대 국민 평온권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일부개정) 및 제12조제1항(주요도로상 집회시위 제한기준 구체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와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

청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